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명서

설명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가족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공동체 형성 및 가족친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달서가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 31일로 도래 함에 따라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그 간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8년 4월에 개관한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우리구와 (재)달서문화재단간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22. 9. 22~9. 23.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복지·문화·보건 분야) 자문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 센터는 조암남로 13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627.11m²으로 지상 3층과 4층을 사용 중이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종사자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유아놀이방, 상담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양재실, 요리실(커피바리스타 포함), 소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부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 및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여성친화 프로그램 50개, 학기별로 실용특화, 일반취미, 어린이·영유아 대상 문화강좌 120여개를 운영하여 가족 공동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달서문화재단과 재계약할 예정으로
- 2022년 11월 적격심사를 위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 후 75점 이상일 경우 2023년 1월 재계약을 체결하고 심사결과 75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위탁사무는 조례에 명시한 달서가족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3. 2. 1.~2028. 1. 31.(5년)까지로 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달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번 호	00922037
-------------	----------

제출일자: 2022. 9. 30.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가. 가족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공동체 형성 및 가족친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달서가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 31일 도래함에 따라
- 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달서가족문화센터	조암남로 137	• 시설규모: 지상 3·4층, 연면적 1,627.11m ² • 주요시설: 프로그램실, 유아놀이방, 컴퓨터실, 양재실, 요리실, 소공연장 등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달서문화재단과 재계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75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 위탁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위탁금)

【2022년도 예산(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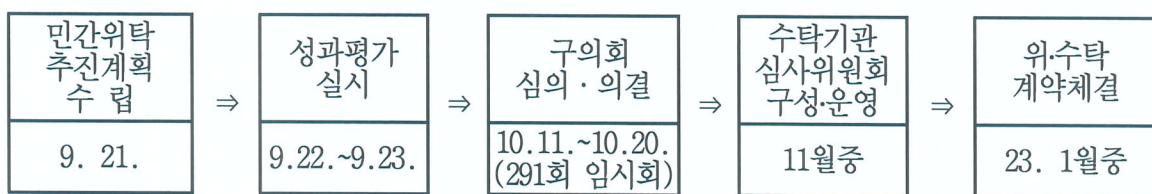
(단위: 천원)

구 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610,869	569,769	41,100

○ 위탁사무

- 가족의 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 문화·예술 강좌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가족문화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위탁 추진절차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적정

- 정책자문위원회(복지·문화·보건 분야) 자문 결과
 -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력 운용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가중, 전문성 저하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구에서 직영 방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지난 5년여의 센터 운영 경험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됨.

- 민간위탁 방식은 후원금, 자체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 실현 방안 제시가 필요
-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성과측정 방법의 구체적 측정지표가 필요
- (재)달서문화재단은 달서구가 직접 출자·출연한 공익법인으로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됨.
-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관리매뉴얼 또는 운영매뉴얼의 시스템적 제시가 필요함
-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서비스 충돌이나 독과점 등의 폐해 가능성이 비교적 낮음

3. 참고자료

가.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2022. 11.
- 수탁기관 선정: 2022. 11.
- 위·수탁 계약체결: 2023. 1월중
- 위·수탁 개시: 2023. 2. 1.

나. 관계법령: 붙임 1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라.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으로 하려는 경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등)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보건분과 자문결과

- 복지분야(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김진홍)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구에서 직영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협력적 동반자 모델에 입각하여 최근 많은 문화복지시설 운영이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적 고려,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력 운용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가중, 전문성 저하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구에서 직영 방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지난 5년여의 센터 운영 경험에 더하여 관련 조례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 방식은 후원금, 지원금, 자체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로 구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운영법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시설운영 경험뿐만 아니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에 비춰볼 때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객관적이고 적극적 성과측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매년 말 사업결과 보고서 평가 및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본 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재)달서문화재단은 달서구가 직접 출자·출연한 공익법인으로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수탁 계약체결 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을 적시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지역의 대표적인 가족문화시설로 가족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과의 서비스 충돌이나 독과점 등의 폐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 도시브랜드마케팅 분야(동아애드(주) 대표 곽대훈)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p>기본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천하며, 단, 위탁운영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효율적 운영 능력 및 방안 제시 (2) 센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준높은 서비스 방안 제시 (3)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4) 다른 센터와 비교하여 차별적 요소 제시 (5) 년간 운영 추정손익계산서 제시 (6) 추정손익계산서에 있어서 주요계정별 비중 제시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p>직접운영보다 위탁운영을 선택하는 것은 위탁운영에 따른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고 위탁운영에 따른 장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지만 다음의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체크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다소 모호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공급과 비교하여 추가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매년 동일한 서비스 공급 수준이라면 사회적 지수가 성장하고 급변하는 과정에서 후퇴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음. (2)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리 우수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안전성이 무너지면 가장 실패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 제시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상문제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제시 필요 ② 센터 운영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 ③ 문제 발생시 긴급 대응 방안 제시 필요

3. 경제적 효율성	<p>직접운영 시에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위탁운영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의 부담 최소화가 되는 만큼 위탁운영에 따른 센터 이용고객의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고, 위탁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 실현 방안 제시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 손익계산서] 제시 필요 (2) 구의 지원 예산 활용 이외 위탁운영업체의 추가 수익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평가요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추가 수익 모델 제시는 위탁운영 업체의 수동적 운영과 능동적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표가 될 수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p>직접운영 시에 구의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기에 위탁운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며, 위탁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사사례 운영 실적 (2) 운영실적에 있어서 직영비율, 재위탁비율 등 체크 필요 (3) 위탁운영 기관의 인적 구성 비율 : 정규직원, 계약직원 비율 등 (4) 총직원 대비 전문직원현황, 근속연수현황 등 파악 필요 (5) 총직원 대비 당 센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원 파악 필요 (6) 위탁운영기관과 구의 담당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및 정기, 수시 소통 방법 제시 필요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p>직접운영 시에 구 자체적으로 성과측정의 어려움이 있기에 위탁운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사업 성과와 관련된 성과측정 방법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구에서 위탁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활용할 측정지표가 필요합니다. 측정지표에 있어서 KPI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 (2) 성과관리의 핵심이 [측정지표=KPI]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지표, KPI는 심플하고 측정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개발 -KPI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개발 필요 -KPI 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통한 중요항목에 집중 필요 -KPI 항목별 측정점수가 차후 계약기간 연장과 연동 필요 (3) 측정주기의 세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만료 3개월전은 과정 중시보다 결과 중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주기별로 평가가 필요하며, 월별은 너무 빈도가 잣다면 분기별, 반기별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운영기관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 평가를 통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측정지표에 의하여 절대적 평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정제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며, 절대적인 평가 점수가 확보된 상황에서 상대적 우위가 필요함.

<p>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p>	<p>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객(이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매뉴얼 또는 운영매뉴얼의 시스템적 제시가 필요함.</p>
<p>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p>	<p>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있어서 <u>[고객, 서비스, 마케팅]</u> 관점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필요가 있음.</p> <p>(1) 사회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우량한 제품은 많습니다.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품질의 우수함이 아니라 품질의 우수함은 기본이 되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소비자의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충족을 시켜주어야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즉 제품품질의 우수성과 마케팅의 힘이 어우러질 때 제품의 가치는 높아지게 됨.</p> <p>(2) 무형서비스 제품에 해당하는 센터의 경우, 유형제품보다 더 많은 <u>[고객, 서비스, 마케팅]</u> 관점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u>[고객, 서비스, 마케팅]</u> 등과 관련하여 큰 가중치를 두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센터 위탁운영기관의 핵심은 <u>[고객, 서비스, 마케팅]</u>을 이해하고 이것을 센터 이용고객에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센터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달서구의 경쟁력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p>

붙임 3**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가족과-27626
등록일자	2022. 09. 21.
결재일자	2022. 09. 21.
공개여부	비공개(4)

여성친화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2. 9. 21.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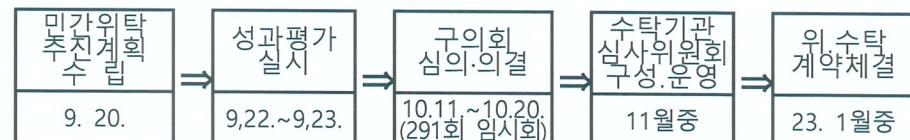
기획조정실장



-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2018. 2. 1.~2023. 1. 31.)에 따른 -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추진개요】**

- 위탁시설: 달서가족문화센터(조암남로 137)
- 위탁사무: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등 가족문화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2023. 2. 1.~2028. 1. 31.(5년)
 - ※ 현 위·수탁 기간: 2018. 2. 1.~2023. 1. 31.(5년)
- 위탁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위탁금)
- 수탁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수탁기관심사위원회) 후 재계약 추진
 - ※ 심사결과 평균점수 75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
- 위탁법인: (재)달서문화재단
- 추진절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사전 검토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	--

-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2018. 2. 1.~2023. 1. 31.)에 따른 -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 2023. 1. 31일자로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제16조

II 추진방향

- 위탁사업(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출자·출연기관인 (재)달서문화재단에 재계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성 및 공신력 제고

III 추진개요

- 위탁시설: 달서가족문화센터(조암남로 137)
 - 시설개요

층별	규모(㎡)	주요시설	비고
계	1,627.11		
지상3층	849.71	◦ 사무실, 유아놀이방,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3, 양재실, 커뮤니티 공간	
지상4층	777.40	◦ 소공연장, 프로그램실 2, 요리실(커피바리스타 포함)	

※ 지상 1·2층: 가족문화도서관 운영

○ 위탁사무 주요내용

-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 문화·예술 강좌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 ※ 사업의 전문성에 따라 중도에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에 가족문화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위탁기간: 2023. 2. 1.~2028. 1. 31.(5년)

※ 현 위·수탁 기간: 2018. 2. 1.~2023. 1. 31.(5년)

○ 위탁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위탁금)

○ 수탁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수탁기관심사위원회) 후 재계약 추진

※ 심사결과 평균점수 75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 절차 추진

○ 위탁법인: (재)달서문화재단

수의계약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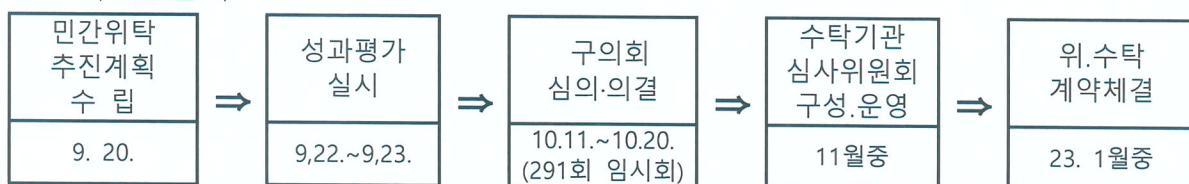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추진절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1】

□ 위탁기관 성과 평가

- 평가실시: 2022. 9. 22. ~ 9. 23.
- 평가대상기간: 2019. 1. 1.~2021. 12. 31.(최근 3년간 추진실적)
- 평가대상: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사업
- 평가방법: 성과평가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량 및 정성평가
- 평가결과: 区 홈페이지 게시

※ 위탁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여성가족과-27170(2022. 9. 16.)호

□ 민간위탁 의회 사전 동의

- 기 간: 2022. 10. 11.~10. 20.(제291회 임시회)
- 내 용
 - 재계약에 따른 의회 사전 동의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 위탁시설개요, 위탁기간, 위탁자선정방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등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일 시: 2022. 11월중
 - 구성인원: 6~9명 이내
 - 구의원, 관계공무원
 -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명성과 투명성이 확고하고 책임이 있는 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수립 추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22. 11월중
- 장 소: 4층 소회의실 예정
- 심사방법: 세부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 * 심사결과 평균점수 75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 절차 추진
- 심사내용: 사업운영실적,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능력 등 적격여부 심사
- 평가결과: 区 홈페이지 게시

V 향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9. 29.限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2. 11월중
- 위 · 수탁 계약 체결: 2023. 1월중

붙임: 1. 적정성 검토결과 1부

2. 관련 법령 1부

문서번호	여성가족과-28249
등록일자	2022. 09. 27.
결재일자	2022. 09. 27.
공개여부	비공개(4)



여성친화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전결 2022. 9. 27.
우경화	이선미	윤영호
협 조		

달서가족문화센터 위탁사업 성과평과 결과보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사전 검토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	----------------------------------

달서가족문화센터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 달서가족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I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II 평가개요

- 평가대상: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사업
- 대상기간: 2019. 1. 1.~2021. 12. 31. ※ 최근 3년간 실적평가
- 수탁기관: (재)달서문화재단
- 평가기간: 2022. 9. 22.~9. 23.
- 평가방법: 평가심사위원회 구성 후 평가자료에 의한 서면심사
- 평가지표: 2개 분야, 6개 부문, 22개 지표(정량 14개, 정성 8개)
 - 리더십과 책임경영, 인사 및 조직관리, 재무 및 예산관리
 - 사업성과, 시설관리, 사업 활성화 노력
- 결과활용: 위탁사무 개선 및 향후 재계약 심의 시 반영

III 평가결과

- 평가점수: 80.49점(※ 성과평가표: 【불임】 참조)

구분	계	경영시스템				사업성과 및 시설운영			
		소계	리더십과 책임경영	인사 및 조직관리	재무 및 예산관리	소계	사업성과	시설관리	사업활성화 노력
배점	100	50	10	15	25	50	25	10	15
평가점수	80.49	37.89	8.8	12.49	16.6	42.6	22	9	11.6

○ 총평

- 달서가족문화센터 성과평가 결과, 경영시스템 분야 37.89점, 성과 및 시설운영 분야 42.6점으로 종합점수 80.49점으로 나타났음.
- ‘행복한 라온달서, 예술로 빛나는 대구의 중심’이라는 비전아래 구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주요사업 및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족·부부 주제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해 가족의 가치 증진과 행복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가족의 의미 제고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 운영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이 돋보임.
-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별한 민원 제기사항이 없는 점, 갑질비리·부정채용 등의 비리 사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도덕적·법적으로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 평가결과

(리더십과 책임경영)

- 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음.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였음.

(인사 및 조직관리)

- 자체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과 연 2회 근무성적 평정 실시, 직원의 전문성·근무경력·적성 등을 고려한 보직 부여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 임·직원들의 내·외부교육이수 합계는 294시간으로 기준 대비 49%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대면 교육 미실시로 교육 실적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채용비리·갑질 등의 비리사항 발생 건이 없어 기관이 도덕적·법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됨.

(재무 및 예산관리)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재단법인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강좌 축소운영에 따라 2020년·2021년 자체수입율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율 및 일반관리비 충당율이 각각 13.62%, 49.86%이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2019년 区 자체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공공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 할 때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나, 조달 계약율이 2.8%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조달 계약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사업성과)

- 가족문화센터의 주 이용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주제별 특강, 부모교육, 가족심리테라피, 문화놀이터 등 가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가족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강좌를 최근 3년간 신규 개설(230건) 및 기존 강좌를 개선(9건)하여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족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였음
- 이용자의 선호도와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종합만족도는 2019년 79.7점, 2020년 86.1점, 2021년 81.3점으로 나타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시설관리)

- 재난상황별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서 합동 소방 교육·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대응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가족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음
- 직원 교육 및 시설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가족문화센터의 안전관리 노력과 역량이 돋보임.

(사업활성화 노력)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심리 상담, 영화해설, 공연,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을 운영하였으나, 차별화된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노력이 요구됨.
-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북 제작, 언론보도, 페이스북,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IV

향후 계획

- 성과평가 결과 공개(區 홈페이지): 2022. 9. 28.(수)限
- 성과평가 결과 활용: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심의 시 반영

【불임】

달서가족문화센터 위탁사업 평가결과

평가분야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실적	평가점수
	계		100		80.49
경영시스템 (50점)	1. 리더십과 책임경영(10)	1. 경영층의 리더십전문성 및 책임경영 의지	5	정성	4.4
		2. 구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주요사업 및 중장기 사업 추진	5	정성	4.4
	2. 인사 및 조직관리 (15)	1. 인사조직 관리의 적정성	10	정성	8
		2. 종사자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비율 (배점) 30%이상(2점), 20~29%(1.5점), 10~19%(1점), 10%미만(0.5점)	2	75%	2
		3. 지원기능인력 비율 (배점) 30%미만(2점), 30~39%(1.5점), 40~49%(1점), 50%이상(0.5점)	2	20%	2
		4. 임직원 교육실적 (산식) 교육이수시간합계/(직원수×내외부교육 이수기준시간) 100% 달성을	1	49%	0.49
		5. 기관의 도록적법적 건전성검찰비리/성추문/부정채용 등의 지적건수 (배점) 5건 이상(-5점), 3~4건(-3점), 2건 미만(-1점)	감점 지표	없음	-
	3. 재무 및 예산관리 (25)	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10	정성	8.6
		2. 자체수입율 (배점) 20%이상(3점), 19~15%(2점), 14~10%(1점), 10%미만(0.5점)	3	13.62%	1
		3. 일반관리비(자체수입액 대비 행정운영경비) 증당율 (배점) 40%이상(3점), 39~30%(2점), 29~20%(1점), 20%미만(0.5점)	3	49.86%	3
		4. 회계 처리의 투명성(회계감사 지적건수) (배점) 없음(3점), 5건 미만(2점), 5~10건(1점), 10건 이상(0.5점)	3	14건	0.5
		5. 업무주진비 집행 및 공개 (배점) 90%이상(3점), 89~80%(2점), 79~70%(1점), 70%미만(0.5점)	3	91.3%	3
		6. 조달계약 실적 (배점) 90%이상(3점), 89~70%(2점), 69~50%(1점), 50%미만(0.5점)	3	2.8%	0.5

사업성과 및 시설운영 (50점)	4. 사업성과 (25)	1.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정성	9
		2.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 실적 (배점) 10건 이상(5점), 7~9건(3점), 4~6건(2점), 4건 미만(1점)	5	239건	5
		3. 프로그램 주진(이용자 수) 실적 (배점) 연 3천명 이상(5점), 3천명 미만~2천명 이상(3점), 2천명 미만 ~ 1천명 이상(2점), 1천명 미만(1점)	5	4,845명	5
		4.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배점) 90점 이상(5점), 80점 이상~90점 미만(3점), 70점 이상~80점 미만(2점), 70점 미만(1점)	5	82.3점	3
	5. 시설관리 (10점)	1. 시설안전관리의 적정성	10	정성	9
		2. 연간 평균 안전사고 발생건수 (배점) 10건 이상(-5점), 5~9건(-3점), 1~4건(-1점)	감점 지표	없음	-
		3. 연간 평균 고충민원 발생건수(동일내용, 단순반복 민원제외) (배점) 10건 이상(-5점), 5~9건(-3점), 1~4건(-1점)		없음	-
	6. 사업활성화 노력(15)	1. 공모사업 주진 등 사업비 확보 노력	10	정성	7.2
		2. 사업 홍보 노력	5	정성	4.4